

서울특별시 서소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(유지웅의원 대표발의) 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474호)

○ 2026.03.26.
○ 운영위원회
위원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6. 3. 13. 유지웅의원 외 6인(발의7, 찬성0)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3. 16.
- 다. 상 정 일 자 : 2026. 3. 26.
- 라.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: 제34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(1회 1일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유지웅 의원)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라, 특수업무 분야를 위한 지방전문경력관 신규 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,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임용권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커 권한의 남용과 채용 비리의 소지가 있음. 이에,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고시토록 하여,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채용 비리의 발생 소지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.
아울러, 규칙 내 미비 사항 전반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성훈)

■ 개정취지

- 지방전문경력관 채용과 관련하여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현행 규칙에 대하여 특혜발생 가능성 및 채용비리 발생소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결과 현행 규칙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는 바, 이를 반영해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고시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우리구 의회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를 통해 조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■ 주요 개정규칙안 검토

- 안 제1조·제8조·제17조·제20조·제26조·제31조 등은 우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군·직렬과 관련한 사항으로 현행 규칙에서 정하는 “연구직¹⁾ 및 지도직²⁾”의 경우 우리구의회와는 다소 연관성이 부족한 직군·직렬로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.
- 안 제16조(신규임용시험의 특전)는 전문경력관의 신규 채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5조의3(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) 제3항³⁾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전문경력관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가산할 수 있는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1) 연구직 : 학예직군(학예연구, 편사연구, 기록연구, 심리연구), 과학기술직군(공업연구, 농업연구, 임업연구, 수의연구 등)

2) 지도직 : 농촌지도직렬(농업, 농업경영, 임업 등), 어촌지도직렬(어촌)

3) 제55조의3(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)

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되,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7조제1항 각 호(제2호는 제외한다)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며,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·방법·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이는,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과 함께 가산 대상 및 가산 비율에 관한 정보가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채용비리의 발생 소지가 매우 높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,
 - 현행 제16조 단서를 임용권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고시 또는 공고하는 방식 등으로 명확하게 공개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.
- 신설되는 안 제23조(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)는 「지방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」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경우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자치분권에 따른 향후 지방의회 의회직 신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사항임.
- 그 밖에 불필요한 인용 조문, 조번호, 별표 등 전체 조문에 대한 정비가 있음.

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]

- 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영은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[지방공무원 임용령](이하 “임용령”이라 한다) 제3조의2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,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, 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]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② 임용령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7조제3항만을 적용한다.
- 제3조(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- 제5조(임용방법) 지방전문경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(이하 “경력경쟁임용시험등”이라 한다)으로 임용한다. 이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·제3호·제7호·제9호·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■ 종합검토

- 지방전문경력관 신규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·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용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와 선택적 정보 제공에 따른 채용비리 발생 소지가 높은 현행 규칙에 대하여
-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고시 또는 공고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공개 함으로써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,
- 그 밖에 불필요한 조문, 조번호, 별표 정비 등 조문 전체에 대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사 및 토론요지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체계사구정리내용 : 없음